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 - 10호

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2. 09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-1외 1필지
 - 정비구역의 면적 : 16,736.7m²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우성3차재건축주택조합 대표 허창화
 -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, 6층 (서초동, 동아타워)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의 인가일 : 2017.02.09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(1) 대지면적 : 16,527.10m²
 - (2)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33층, 아파트 4개동(421세대)
및 부대·복리시설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전용면적기준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~85㎡ 이하	85㎡ 초과~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421	85	211	60	65
토지등소유자	306	20	200	38	48
일반분양	50	-	11	22	17
임 대	65	65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설 : 도로 209.60㎡

2) 폐지 : 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6. 주요변경내용 : 총소요사업비, 수입추산액 등의 증감반영,
현금청산자 1명 증가

7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3)에 비치하고
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